

5. 위탁자가 부동산 · 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
 6.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- ④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[\[신설 2022. 12. 9.\]](#)
1.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· 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· 주소를 말한다)
 2. 물류단지의 명칭 · 위치 및 면적
 3. 신탁개발의 목적 · 종류 · 신탁기간이 포함된 신탁개발사업의 개요
 4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계획
 - 가. 물류단지개발사업 위치도
 - 나. 물류단지개발사업 자금조달계획서
 - 다.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· 시설 등의 처분계획서
- ⑤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[\[신설 2022. 12. 9.\]](#)
- [제목개정 2022. 12. 9.]

- 제25조(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)**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 [\[신설 2024. 2. 6.\]](#)
1.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: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
 2.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: 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시설
-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 · 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. [\[개정 2024. 2. 6.\]](#)
1.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: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1호의 시설
 2.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: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2호의 시설
-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24. 2. 6.\]](#)
- ④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24. 2. 6.\]](#)
- ⑤ 시행자(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. [\[개정 2024. 2. 6.\]](#)
1.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, 환지의 가액은 제39조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
 2.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 3.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공공시설의 범위)**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